

프랑스의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한 특별 실업보험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노동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어 사전 Le Grand Robert¹⁾는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이라는 단어의 뜻을 ‘간헐적, 불연속적, 불규칙적’이라는 형용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을 지칭할 경우 ‘비정기적이며, 단기간의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면서, ‘공연예술 앵테르미탕(Intermittent du spectacle)’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연극, 뮤지컬 등과 같은 공연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노동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일종의 비정규직 직업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공연예술 앵테르미탕’이라는 표현은 단지 무대 공연과 관련된 종사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체결되고 있는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한 단기 계약직을 뜻한다.²⁾ 이들은 2014년 2월 17일 파리에서의 총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부터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2월 13일 사용자단체 메데프(Medef)가 주장한 특별 실업보험체제 폐지에 대한 반대, 그리고 3월 22일 실업보험 개혁에 대한 노사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후퇴한 이들의 처우에 반발하여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2003년 아비뇽 축제(국제 연극제) 취소³⁾ 사태 재현의 우려가 나올 만큼 이들의 분노는 예사롭지 않다. 물론 문화부 장

1) Grand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2005년. 즉 앵테르미탕은 특수한 형태를 지닌 노동계약의 한 범주를 뜻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이라는 특성을 지닌 직업군 및 계약의 형태를 표현하는 적당한 한국어어를 찾아낼 수 없어,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3) 아비뇽 축제(Festival d'Avignon, 공식명칭)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극제 중 하나로, 매년 7월 프랑스 남

관이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혔고,⁴⁾ 올해 말까지 정부와의 협상 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2003년 이후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특별 실업보험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2014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해당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논란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의 법적, 제도적 지위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Intermittent du spectacle)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법전은 이러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영화제작, 방송 또는 공연 관련 직업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종사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활동이 (노동법전) 5424-20에서 예고하고 있는 실업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노동법전 L.5425-3)
-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 혹은 일자리의 일시적인 특성상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정규직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제작, 방송, 그리고 공연 활동 영역에 속한 근로자(노동법전 L.6331-55)

노동법전에 언급된 내용 중에서 ‘관례적(d’usage)’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DD(Contrat à durée déterminé, 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비정규직 노동계약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영역에서 체결되지만, 사용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수의 제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두 차례를 초과한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례적 비정규직(CDD d’usage, CDDU)은 노동법이 정한 특정 영역⁵⁾ 내에서 제한 없는 계약 갱신이 가능한

부 도시인 아비뇽에서 열린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실업보험제도를 둘러싼 노사협정에 반발, 문화 예술 부문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고, 결국 행사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4) Le Monde(2014. 4. 16), « Aurélie Filippetti intervient en faveur des intermittents ».

5) 노동법전(Article D.1242-1)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종 및 영역을 15가지로 제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있어 이러한 계약 형태가 이로운 또 다른 이유는 하나의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요구되는 유예기간, 즉 대기기간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반적 비정규직(CDD)의 경우, 하나의 일자리에 14일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 만료 이후 같은 자리에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앞선 계약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의 단기 계약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안에는 동일한 일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14일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절반).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계약형태 중 하나가 관례적 비정규직(CDDU)이다(노동법전 Article L.1242-2의 세 번째 항목). 마지막으로 일반적 비정규직과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은 간접고용(Intérim) 종사자에게 계약만료 시 지급되는 불안정성 수당 및 보상금(indemnité de précarité) 제도 역시 관례적 비정규직(CDDU)를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실업보험 규약에서도 관례적 비정규직(CDDU)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실업보험 규약의 별첨 8(Annexe VIII)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공연예술, 방송, 영화 분야에 속한 기업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례적 비정규계약(CDDU)을 맺고 종사하는 노동자 및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최소 507시간 이상의 노동을 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영역 내에 고용되어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이나 일반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앵테르미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10개월 반이라는 기간 내에 507시간의 노동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앵테르미탕이라고 할 수 없다. 요컨대,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 수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불안정 노동 인구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의 간략한 역사

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특별한 고용형태의 기원은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화산업 내에는 연기자를 비롯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화제작자들은

한하고 있지만, 이 중 여섯 번째 항목에 ‘무대공연, 문화 활동, 방송, 영화 제작, 녹음편집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대부분의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관례적 비정규직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인력 수급의 편의를 위해 다종의 사용자와 계약이 가능한 체제를 지지했다(Frédéric CHHUM, 2013). 즉 동시다발적인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salarié intermittent)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어 1939년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유급휴가 및 기금을 관리하는 창구(Caisse des Congés Spectacles)가 만들어졌고, 1958년 프랑스에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를 Unédic⁶⁾이 관리하게 된다. 그 후 1969년까지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한 규약(Convention d'assurance chômage)⁷⁾의 별첨자료에는, 영화와 방송분야 기술직, 관리자 및 노동자들을 명시하고 있는 별첨 8(Annexe VIII)과 공연, 영화, 방송 등의 분야에 고용된 예술가와 공연예술분야의 관리직, 기술직, 노동자들의 포함시키는 별첨 10(Annexe X)이 삽입된다(Pierre-Michel MENGER, 2011).⁸⁾ 그리고 1992년부터 별첨 8과 10의 대상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계속해서 연기되어 2013년 6월 마침내 공연기술직(별첨 8)과 공연예술가(별첨 10)의 실업보험 자격 요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 전자에 대해서는 10개월(304일) 내 507시간 노동, 후자에 대해서는 10개월 반(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507시간 노동을 실업보험 혜택 자격의 요건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실업보상금 지급 기간은 8개월로 결정되었다. 2003년 이전 12개월이었던 기간이 줄어들면서 자격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관계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2003년 아비뇽 축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공연축제가 무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한편 실업보험기금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업수당 지급기간(8개월)이 긴 이 특별 실업보험체제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반면, 당사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10개월 혹은 10개월 반) 내에 507시간의 노동을 채워야 하는 엄격한 자격요건의 완화를 주장해왔다.

6) 1901년에 창설된, 상공업 부문 고용을 위한 전 직종 전국연합(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으로, 1958년 이후에는 실업보험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7) 노사는 3년마다 이 협약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협상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8)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계약으로 꼽히는 간접고용(Intérim) 종사자에 대한 실업보험도 운영 방침은 별첨 4(Annexe IV)에 설명되어 있다.

■ 프랑스 문화산업 종사자 현황 및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을 위한 실업 보험제도

비교적 최근 발표된 두 개의 연구자료(IGF et IGAC, 2013; Emst & Young, 2013)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문화산업(넓은 의미)이 창출해내는 연간 부가가치는 약 600억 유로로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3%가량을 차지하며, 이 분야에 고용된 인구는 2010년 기준 67만 명으로 전체 고용 인구의 2.5%이다. 이 같은 수치는 부가가치 면에서 농업 및 농산물 가공업 분야와 비슷하며, 제조업 중 자동차 산업의 7배에 해당한다.⁹⁾ 문화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Chantal LACROIX, 2013) 역시 2009년 기준 전체적인 문화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를 60만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범주를 예술분야로 좁혔을 경우, 통계청(INSEE)의 2010년 고용조사(Enquête Emploi 2010)에 따르면, 예술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총 31만 6천여 명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약 1.2%를 차지하며, 이 중 공연예술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15만 5천 명이다 (표 1 참조).

〈표 1〉 예술부문 종사자 현황(2009년)

(단위 : 명)

직업별 분류	종사자 수
공연예술가	59,141
공연기술자	96,313
문학, 시나리오, 대본 작가	10,318
조형예술가	29,674
사진작가	23,336
그래픽, 디자인 작가	97,650
예술부문 종사자 전체	316,432
고용인구 전체	25,449,256

자료 : Enquête Emploi 2010(INSEE), Jean-Patrick GILLE(2013)에서 재인용.

9) Franceinfo(2014. 1. 17), «Auréliе Filippetti dit-elle vrai sur le poids économique de la culture?».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현행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을 위한 실업보험제도는 기술직과 예술가 직군으로 나뉜다. 기술직에 비해 좀 더 열악하다고 여겨지는 공연예술가들은 10개월 반 동안 507시간, 주 35시간 기준 약 3개월 반 정도의 직업활동을 한 경우 8개월간의 실업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일 노동 = 1일 보험금 지급'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실업보험 가입자들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실업수당 혜택이 주어진다(표 2 참조). 하지만 일반 실업보험 자격 충족 요건이 28개월 내 610일의 노동인 반면, 이 특별 실업보험의 기준은 10개월에 507시간으로 그 조건이 훨씬 더 엄격하다.

〈표 2〉 실업보험 적용 기준

		기준노동시간	기 간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공연예술 종사자	기술직	507시간	10개월	243일(약 8개월)
	예술가	507시간	10개월 + 1/2개월	243일(약 8개월)
일반 가입자		610시간	28개월	1일 노동 = 1일 지급 원칙

2011년 기준,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39만 명이지만, 이 중 3분의 1가량(126,858명, 2010년 고용센터 발표자료)은 정규직(CDI) 및 비정규직(CDD)이 가입하는 일반 실업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3분의 2에 해당하는 254,394명이 특별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납입했다(Jean-Patrick GILLE, 2013). 하지만 이들 중 최소 하루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인구는 108,658명으로 43%에 지나지 않는다. 즉 57%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직업활동으로 실업을 겪지 않은 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CDI) 혹은 비정규직 노동계약(CDD)을 맺지 않은 이들의 특성상 1년 내내 고용 상태에 있었던 인구는 적을 수밖에 없다. 즉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행 실업보험금 납입액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임금 대비 비율이 달라진다(표 3 참조). 일반적으로 정규직 및 3개월 이상의 노동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의 4%, 근로자가 2.4%를 각각 부담하여, 전체 지불 임금액의 6.4%가 실업보험금으로 납입된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확대사회보장분담금 0.3%를 제외한 경우). 하지만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을 위한

특별 실업보험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7%, 3.8%를 부과하여 지불 임금의 10.8%가 실업보험금으로 적립된다. 즉 일반 근로자에 비해 특별 실업보험체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실업보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3〉 실업보험금 납입 비중(임금 대비)

(단위 : %)

계약 형태		전체	사용자	근로자
정규직(CDI)		6.4	4	2.4
일반 비정규직	3개월 이하	6.9	4(+0.5)	2.4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7.9	4(+1.5)	2.4
	1개월 이하	9.4	4(+3)	2.4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		10.8	7	3.8
비정규직 계약 적용	3개월 이하	11.3	7(+0.5)	3.8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12.3	7(+1.5)	3.8
	1개월 이하	13.8	7(+3)	3.8

■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노사합의문

2014년 3월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노사는 실업보험과 관련된 개혁안의 합의문을 도출했다.¹⁰⁾ 하지만 협상 첫날이었던 2월 13일, 사용자단체인 메데프의 제안 사항 중에는 현재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특별 실업보험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계자뿐 아니라, 노동조합, 그리고 문화부 장관의 반발을 샀다.¹¹⁾ 2012년 회계 감사

10) 2014년 2월 13일 시작된 이번 협상 기간은 3월 13일까지였으나, 예정된 한 달을 열흘가량 넘기면서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11) 한국노동연구원(2014), 「세계 노사정 소식 : 프랑스 : 실업보험 개혁 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국제노동브리프』 12(3).

원이 연간보고서(La Cour des comptes, 2012)에서 강조했던 10억 유로 적자가 제안의 첫 번째 배경이었으며,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었다(Medef, 2014). 결국 특별 실업 보험제도의 보존에 만족하며, 서명에 합의한 세 노동조합은 한걸음 후퇴한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의 실업보험제도의 변경을 받아들였다. 변경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보험료 납입금액이 인상된다. 임금 대비 사용자 부담은 8%, 근로자 부담은 4.8%로 총 10.8%에서 12.8%로 상승하게 된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유예(différé d'indemnisation)가 시행된다. 실업급여가 노동계약 만료 이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다.¹²⁾ 이로 인해 지급유예 기간의 적용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9%에서 47%로 늘어날 전망이다.¹³⁾ 셋째, 실업수당 한도액이 도입된다.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또 다른 노동계약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도액 제도가 도입되면 임금소득과 실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4,283유로를 넘지 못한다. 이상의 세 가지 변경 사항과 더불어, “서명에 합의한 노사는 국가(정부)가 2014년 내에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노동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특히 이들의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이 과정에 종사자들의 대표와 해당 분야 사용자 대표를 참석시켜 주기를 요구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즉 모든 변경 사항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업보험 개혁을 둘러싼 이번 노사협약은 공연예술부문 종사자들, 즉 특별 실업 보험체제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에게는 우호적이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부채와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감이다. 사회당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0억 유로의 재정지출 감소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무분별한 사회보장비 지출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¹⁴⁾ 또한 앞서 언급한 회계

12) 이 제도는 2003년 협약 이후 해당 기간(10개월 혹은 10개월 반)에 총 2만 유로(원화 기준 2,9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협약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계산방식에 따라 기준 임금액이 9천 유로(원화 기준 1,300만 원)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유예제도는 일반 실업보험체제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며, 이번 노사협상 결과에 의해 유예기간 한도가 75일에서 180일로 늘어나게 된다.

13) Les échos(2014. 4. 24), «Intermittents : sous pression, le patronat et les syndicats ont corrigé leur copie».

14) 김상배(2013), 「프랑스 ‘책임감 협약’의 내용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12(3),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감사원의 보고서는 10억 유로 적자를 강조함으로써,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이 특별 실업보험의 특혜를 지나치게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둘째, 협상 초기 사용자 단체의 특별 실업보험체제 폐지 제안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제안이 노사협상 첫날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노동계가 특별 실업보험체제의 보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부 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는 2014년 3월 22일 합의문 발표 이후 서명에 동의한 노사가 합의안을 곧바로 비준하지 못하고, 4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수정작업을 마쳐, 5월 초에 비준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합의문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지급유예제도였다. 당초 고액 임금자에게만 적용기로 한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한 계산방식이 저임금 수령자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산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저임금 단기 계약직은 새롭게 지급유예 기간을 갖게 되는 반면, 고액 임금 수령자들은 기존의 제도에 비해 지급유예 기간이 오히려 줄어들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따라서 합의문에 서명한 노사는 4월 24일 계산방식을 수정했지만, 이로 인해 줄어들어 비용절감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 실업수당 한도액(임금소득 포함)을 월 5,475유로에서 월 4,283유로로 낮추었다.¹⁵⁾ 이를 두고, 서명에 동참한 노동조합 FO의 스테판 라디(Stéphane Lardy) 협상 대표는 “이 안건이 협상 마지막 날에서야 논의되었다”고 밝히며, “특별 실업보험체제를 지켜야 했고, 메테프는 협상 첫날 특별 실업보험체제에서 2억 9천만 유로의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기에, 결과적으로 그 액수를 1억 8천만 유로로 낮췄으니 선방한 셈”이라고 설명했다.¹⁶⁾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실업보험체제를 강하게 지지해왔던 오렐리 필리페티(Aurélie Filippetti) 문화부 장관 역시 합의문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특별 실업보험체제가 유지된 것에 만족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¹⁷⁾ 반면 서명을 거부한 CGT의 협상 대표였던 CGT-Spectacle의 드니 그라부이(Denis Gravouil)는 “특별 실업보험체제에 대한 보다 적

15) 처음 제시된 한도액 5,475유로의 경우, 2014년 사회보장지급 한도액(일일 172유로, 주 722유로, 월 3,129유로, 연 37,548유로)을 토대로 월 한도액의 175%로 정해졌지만, 이후에 결정된 4,283유로의 경우, 예측 가능한 비용 절감효과에 의해 정해졌다.

16) Le Monde(2014. 4. 25), «Les intermittents dénoncent le «toiletage» de l'accord sur l'assurance-chômage».

17) 그러나 장관은 이후 특별 실업보험의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으며, 이러한 태도로 인해 아직 비준을 마치지 않은 노사협상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절하고, 정당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가 없었다. 결국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만 채택되었다”고 비판했다.¹⁸⁾ 결국 이번 협상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인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제안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보지도 못한 채, 특별 실업보험체제의 존속과 실업보험기금 적자 해소에 치중한 나머지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 쟁점

이 보험체제가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특별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비교적 단순하다. 2003년에 맺어진 협약 이전으로 돌아가 현행 10개월 혹은 10개월 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특별 실업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일반 실업보험체제로 편입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실업보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요컨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더 큰 문화예술부문 단기 계약직들에 대한 특별 대우가 대규모 적자 운영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논란의 한 축이다. 전체 구직자(실업자)의 3%에 불과한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들을 위해 실업보험관리기구 Unédic이 부담하고 있는 총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유로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Cour des Comptes, 2012). 하지만 이 보험체제의 폐지를 통해 10억 유로의 낭비를 막자는 주장은 재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다수의 언론이 지적했듯이 폐지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3억 2천만 유로에 불과하다(Jean-Patrick GILLE, 2013). 문화예술부문 단기 계약직 종사자들을 일반 보험체제로 편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억 유로 적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납입액에 비해 지급액이 10억 유로나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특별 실업보험 가입자들의 납입액 대비 지불액(실업급여)의 비율은 5.3¹⁹⁾으로, 일반 비정규직(CDD) 3.6, 간접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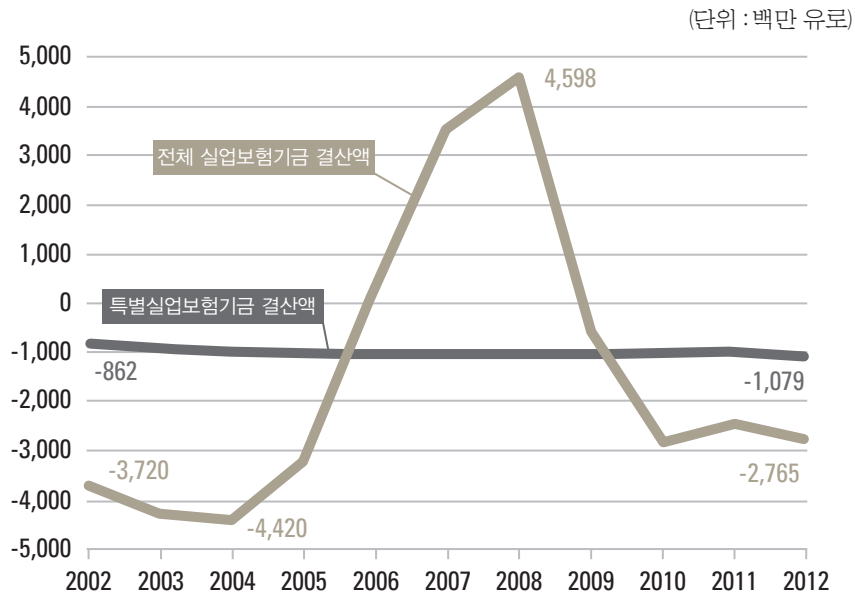
18) Le Monde(2014. 3. 14), «Intermittents : le régime préservé, avec des mesures d'économie».

19)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불된 급여가 5.3배나 높다는 뜻이다.

(Intérim) 2.5에 비해 높다(Cour des Comptes, 2013). 이 적자 폭은 납입액이 지불액보다 2배나 높은 정규직(비율 0.5)에 의해 많은 부분 상쇄된다. 그러나 특별 실업보험의 적자액은 일반 비정규직 56억 유로, 간접고용 15억 유로에 비해 적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근 수년 동안 Unédic이 안고 있는 적자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월간지 *Alternatives économiques*(2014, N°334)가 Unédic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래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특별 실업보험이 발생시킨 적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럼에도 총실업보험 재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 말의 경제위기가 프랑스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이라고 할 때, Unédic의 적자는 정규직의 고용환경 악화로 인한 납입액 감소와 지급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최근의 적자 심화는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을 위한 특별 실업보험체제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은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문화부문의 활동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있으냐는 문제제기이다. 여기에는 특별 실업보험체제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의가 동반된다. 전임 노동부 장관인 미셸 사팡(Michel Sapin) 재정경제부 장관은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 일

[그림 1] 실업보험 재정 상태 변화



자료 : Unédic, *Alternatives économiques*(2014)에서 재인용.

반적 비정규직, 그리고 간접고용과 같은 불안정 노동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정규직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특별 실업보험제도는 이러한 직업 간 연대의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⁰⁾ 흥미로운 점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메데프의 전 수장이었던 로랑스 파리조(Laurence Parisot)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보험체제를 옹호했다는 것이다.²¹⁾ ‘앵테르미탕(Intermittent) 쥐어짜는 일을 멈춰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녀는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을 국가의 관리하에 놓는 것은 결국 이들을 모두 공무원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회계감사원조차도 특별 실업보험제도의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메데프의 특별 실업보험 폐지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서 그녀는 “문화 상품은 여타의 상품과는 다른 것으로, 이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자, 프랑스의 제일 가는 대사(Ambassadeur)”라고 주장했다.

■ 맺음말

2003년 이후 오랜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들의 특별 실업보험체제가 적지 않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노동조합 CGT-Spectacle은 협상에 앞서 다양한 제안을 준비했다. 사회당 하원이자, 2013년 4월 이들의 고용조건을 조사하여 국회보고서로 제출한 장 패트릭(Jean-Patrick) 의원은 보고서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한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90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이들이 맺는 관례적 비정규직(CDDU)을 정규직(CDI)으로 자동전환’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한 달간 전일제에 해당하는 노동을 할 경우, 급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책 중 이번 노사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들의 권리를 축소하면서 경제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뿐이었다. 동시에 이들의 겪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20) Le Monde(2014. 2. 26), «Intermittents : cinq questions pour tout comprendre».

21) Les échos(2014. 2. 24), «Pourquoi il faut cesser de tirer sur les intermittents».

일은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물론 이번 노사협상의 주된 안건은 전체 구직자들의 권리(실업수당 지급 기간의 축적) 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비용절감 대책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예정된 기간을 열흘이나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협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의 비준 없이는 이번 합의문이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가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문화예술 단기 계약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국가의 몫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KLI**

참고문헌

- 김상배(2013), 「프랑스 ‘책임감 협약’의 내용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12(3),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14), 「세계 노사정 소식 : 프랑스 : 실업보험 개혁 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국제노동브리프』 12(3).
- 노사합의문, «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relatif à l’indemnisation du chômage».
- Alternatives économiques(2014), «Les coulisses du régime des intermittents», Avril, N° 334.
- Chantal LACROIX(2013), *Chiffres clés 2013 Statistiques de la culture*, Documentation française.
- Dares(2014), «Les mouvements de main-d’œuvre au 4e trimestre 2013», Avril, N° 034.
- Ernst & Young(2013), «1er panorama des industries culturelles et créatives : Au cœur du rayonnement et de la compétitivité de la France».
- Frédéric CHHUM(2013), *Les intermittents du spectacle*, 2e édition, LexisNexis.
- IGF et IGAC(2013), «L’apport de la culture à l’économie en France».
- Jean-Patrick GILLE(2013), «Rapport d’Information sur les conditions d’emploi dans les métiers artistiques», N° 941, ASSEMBLÉE NATIONALE.

- La Cour des Comptes(2012), «Rapport public annuel 2012».
- La Cour des Comptes(2013), «Le 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 à l'issue des emplois précaires», Référé N°67793.
- Medef(2014), «Proposition de document-cadre pour l'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relatif à l'indemnisation du chômage».
- Pierre-Michel MENGER(2011), Les intermittents du spectacle : Sociologie du travail flexible, nouvelle édition, EHESS.